

재 무 과

위원회별	소관부서	감사항목	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	처 리 결 과			비 고
				계	완결(계속추진)	추진중	
총무위원회	재 무 과	8	1	1	1		

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(재무과)

연번	감사항목	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	처 리 결 과	완결여부	비고
26	수해복구공사	수해복구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시공능력 부족업체에 대하여는 차후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검토	<p>경쟁입찰 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공실적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- 시공능력 부족(기술자 보유의 기준미달)업체는 적격심사에서 탈락되며 - 지체상금을 이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음 <p>부실업체 제재 : 1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 지연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: 입찰참가제한 6월 <p>시공능력부족 및 부실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로 향후 수의계약에서 배제</p>	완 결	

사회복지과

위원회별	소관부서	감사항목	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	처 리 결 과			비 고
				계	완결(계속추진)	추진중	
총무위원회	사회복지과	6	5	5	1	4	

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(사회복지과)

연번	감사항목	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	처 리 결 과	완결여부	비고
27	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공사	둔치주차장 시설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 이동통로시설 설치요망	둔치주차장의 이동통로 및 진출입로의 장애인 시설은 현지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임.	완 결	(경제과)

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(사회복지과)

연번	감사항목	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	처 리 결 과	완결여부	비고
28	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	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의 용자한도액이 5,000 천원이 너무 적으며,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자의 보증을 받아야하므 로 용자가 어렵고 관련 조례가 제정된지가 오래 되어 현실과 맞지 않으므 로 저소득층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(조례) 개정 및 홍보 요망	관련조례인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 회계설치및운용조례 등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 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개정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음.	추진중	

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(사회복지과)

연번	감사항목	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	처 리 결 과	완결여부	비고
29	노인복지관련	노인 일거리 제공 확대 추진(장제물품 제작, 농촌 폐비닐 수거 등)	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마련 을 위해 6개 읍면에 1일 46명, 연 7,360명이 환경 정비 및 꽃길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(소요 예산 73,880천원 확보), '04년도에는 시범경로당 1개소를 지정하여 장제 물품 제작 등 노인 일거리사업을 시행할 계획 으로 있음(소요예산 2,000천원 확보)	추진중	

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(사회복지과)

연번	감사항목	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	처 리 결 과	완결여부	비고
30	장묘문화	납골묘가 많이 설치되면 흉물스럽게 보일것이 예상되므로, 가족·종중납골묘 위주가 아니라 공설 납골묘 위주로 설치가 검토되어야 하는데이의 대책 및 발전방안	<p>납골시설 지원시 가시권내 설치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을 물론 점진적으로 지원사업을 줄여나가고 ('04년도에는 '03년도 물량의 50% 지원계획)</p> <p>단기적으로는 읍,면의 기존 10,000㎡이상 공동묘지에 대하여 1개소씩 묘지 재정비 및 납골묘를 설치하여 묘지난을 해결하고,</p> <p>장기적으로는 군단위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.</p>	추진중	

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(사회복지과)

연번	감사항목	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	처 리 결 과	완결여부	비고
31	장애인 복지 관련	<p>거창군에서 사후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에 장기를 기증하는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 강구</p> <p>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점자블럭이 횡단보도에만 설치되어 있고 일반 인도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음. 지금 시설하고 있는 인도에는 장애인 이용 점자보도블럭이 시설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</p>	<p>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경남지역본부(창원시소재)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 강구해 보겠음.</p> <p>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상 보도에 점자블럭 설치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나 신설 및 개·보수되는 인도에는 보도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점자블럭이 설치되도록 하겠음.</p>	추진중	(지역개발과)

보 건 소

위원회별	소관부서	감사항목	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	처 리 결 과			비 고
				계	완결(계속추진)	추진중	
총무위원회	보 건 소	6	3	3	3		

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(보 건 소)

연번	감사항목	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	처 리 결 과	완결 여부	비고
32	위생업소 관리	집단급식소를 사전에 지도점검하여 식중독 등 예방에 철저를 요망	집단급식소 지도점검 - 대상 : 30개소 - 점검 : 4회/87개소, 교육 : 2회 - 내용 : 종사자 손 대장균검사 칼,도마,행주,식중독균 검사 건강진단 이행여부 등 - 위반업소 적발 : 1개소(시정명령)	완 결	
		모범음식점 추천시 소비자가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방안 강구	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, 본 위원에 소비자를 위촉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음 2003.11.14일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소비자(단체)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음.	완 결	

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(보 건 소)

연번	감사항목	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	처 리 결 과	완결 여부	비고
33	보건진료소 운영	보건진료소운영수익을 지역주민 에게 환원 한다는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수술비 지원, 보청기 구입지원 등의 각종보건사업추진 요망	<p>보건진료소 주민환원보건사업은 다수주민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위주로 운영협의회 심의·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장애인자활기구 등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라 지역내 대상자가 있을시 향후 대상사업선정 검토 통보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보건사업추진형태(진료소별 선정시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방접종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유행성독감예방접종사업 ◦ 구충제무료투약 ◦ 신증후군출혈열 무료접종 	완결	

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(보 건 소)

연번	감사항목	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	처 리 결 과	완결여부	비고
34	의약품관리	<p>병원, 의원이 없어도 약국만 있으면 의약분업 지역이 되어,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에서 조제를 아니하여 주므로 주민이 매우 불편하니 이런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건의 요망</p>	<p>보건복지부 고시【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 규정】에 의하면 읍·면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실거리로 1km이상일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천면의 경우 보건지소와 약국과의 실거리는 약700m정도임. <p>정책건의(2003. 7. 18) : 보건복지부에 위천면의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건복지부 회신내용(2003. 7. 25) : 의약분업예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불편 또는 주민이 원한다는 이유 등으로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,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 됨. <p>의료기관 및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에 위치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음.</p>	완 결	

문 화 센 터

위원회별	소관부서	감사항목	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	처 리 결 과			비 고
				계	완결(계속추진)	추진중	
총무위원회	문 화 센 터	3	2	2	2		

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(문화센터)

연번	감사항목	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	처 리 결 과	완결여부	비고
35	문화복지센터 복지관운영 현황	문화센터에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시 면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면단위 예매처 확대지정 - 가조면 1개소 4개소(가조, 주상, 위천, 남상면) 프랑카드 확대설치 - 읍 6개소 읍6 + 면 4개소(예매처가 있는 면) 행정조직을 통한 홍보 전환 - 당초 : 전 공무원에게 핸디로 공연안내 - 전환 : 핸디안내 및 읍면장에게 협조공문 발송 홍보물(전단, 팜프렛, 포스터, 도록 등) 비치확대 - 당초 : 문화센터, 군청, 읍면, 은행, 예매처, 아파트 등 - 확대 : 면사무소·면우체국·면농협 창구 홍보물 신문삽입 홍보 전환 - 4개 신문사 1~2일 동시 각기 다른 날 삽입 지역신문 게재 전환 - 4개사 중 2개사에 게재 4개사 모두 게재 	완 결	

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(문화센터)

연번	감사항목	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	처 리 결 과	완결여부	비고
36	문화복지센터 보수	<p>문화센터의 완벽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하자보수 전담직원 배치 및 조속한 완료</p> <p>하자내용 중 “결로” 라는 용어를 “누수” 로 수정 표현하여 하자보수에 적극적인 자세요망</p>	<p>전담직원 배치를 인사부서에 건의한 바, 현재의 인력운용상 가용 인력이 없어 전담직원의 배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므로, 자체인력을 하자보수 담당직원으로 지정하였음.</p> <p>2004년 상반기 중 하자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의되었으며, 조속히 완료되도록 적극 대처하였음.</p> <p>“결로”와 “누수” 라는 용어는 해당 하자부분에 적절하게 사용하여 하자보수에 임함.</p>	완 결 (계속추진)	